

환경부고시 제2003-54호

환경보전협회교육수수료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3조,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 소음·진동규제법 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7조, 폐수기물관리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을 제43조에 의거 교육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3월 17일
환경부장관

과 정 별	교육기간	수수료(원)	비고
(환경관리인 교육)			
- 일반관리자과정	1일	20,000	
- 일반관리자과정	2일	40,000	
- 전문관리자과정	4일	80,000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과정	1일	20,000	
- 폐기물처리자과정	2일	40,000	
- 폐기물재활용신고자과정	2일	40,000	
- 폐기물처리업자과정	2일	40,000	
(기술관리인 등의 교육)			
- 오수처리시설 등의 기술관리인과정	2일	40,000	
- 위생처리시설 설치요원과정	2일	40,00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공고 제2003-43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02. 12. 26, 법률 제6826호)되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운전 기간 동안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상시설을 정하고, 그밖에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련 규정의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시 저황유외 연료사용도 함께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연료 성분분석서, 황산화물 배출 예측량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나. 배출시설 설치제한 기준 및 사업장 중 구분을 연료사용량에서 실제 발생하는 오염물질량으로 전환함.

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시 시운전기간을 부여하여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상시설을 정함.

라. 사료·곡물·고철 등의 운송업, 하역업 및 보관업을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포함.

마. 자동차 정밀검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과징금의 용도를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함

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업무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함.

3. 기타문의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에 문의(전화 02-504-9247, FAX 02-504-9208)

환경부공고 제2003-60호

소음 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음 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4월 16일
환경부장관

소음 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음 진동규제법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45호)됨에 따라 시도지사는 측정망을 설치하여 측정한 자료를 매분기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산업단지내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조성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생활소음 진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 도지사는 관할 구역내 설치된 측정망의 측정자료를 매 분기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나.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시설의 변경 전에 신고토록 신고기간을 명문화 함.

다. 산업단지내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생활소음 진동으로 관리토록 함.

라. 생활소음 진동 관리대상에 발파작업으로 소음 진동을 발생하는 경우를 명문화 함.

마. 특정공사 신고를 공사개시 3일전에서 공사시행전으로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신고서를 제출토록 함.

바. 국립환경연구원을 인증시험기관으로 명문화하고 인증수수료를 시험기관에서 정하도록 함.

사. 운행차 수시점검 면제 대상자동차에 긴급자동차 및 국가의 특수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함.

아. 운행차 검사대행등록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행차 검사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토록 함.

자. 환경관리인의 교육을 환경보건협회외에 환경부장관이 지

정하는 기관에서도 실시토록 하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함.

차. 지도 점검업무 수행시 업체의 부담을 경감키 위해 대기 수질 폐기물 등과 통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문의

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에 문의(전화 02-504-9250, FAX 02-504-5472)

환경부공고 제 2003 - 59호

소음 진동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음 진동규제법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4월 16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음·진동규제법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45호)됨에 따라 종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행정처분 이행보고 사항이 상위법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시행령에서 폐지하는 한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내에 조성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설치되는 소음 진동배출시설은 허가 및 신고토록 함.

나. 소음 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고 보고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에 해

당하여 법에 이기 규정하였으므로 시행령에 규정된 관련조항을 폐지함.

3. 기타문의

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에 문의(전화 02-504-9250, FAX 02-504-5472)

기존 고소음기계에 대한 소음표시권고제를 소음발생기계에 대한 소음도표지 부착의무제로 전환하고, 특정소음발생기계에 대하여는 소음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소음도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제품선정기준으로 소음크기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저소음기계 사용을 촉진하고, 소음발생기계에 의한 민원발생 및 환경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며, 저소음발생기계를 개발 생산하는 업체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양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함(4.8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화학물질(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7-19호, 1997.12.23)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4월 11일
국립 환경 연구원 장

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화학물질중 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화학물질 별표의 2003-3-2320 란 다음에 2003-3-2321 내지 2003-3-235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03-3-2321	"(R,S)-1-[2-Amino-1-(4-methoxyphenyl)ethyl]-cyclohexanol acetate (CAS No. 부여안됨)"
2003-3-2322	4-Methoxyphenylacetonitrile (CAS No. 104-47-2)
2003-3-2323	"[총칭명] Alkenoic acid polymer with alkenylbenzene, alkylacrylate and alkylstyrene"
2003-3-2324	"N-[5-[Bis(2-methoxyethyl)amino]-2-[(4,6-dibromo-2,3-dihydro-2-methyl-1,3-dioxo-1H-isoindol-5-yl)azo]phenyl]acetamide (CAS No. 361379-00-2)"
2003-3-2325	"β-Cyclodextrin, 6-chloro-1,4-dihydro-4-oxo-1,3,5-triazin-2-yl ethers, sodium salts (CAS No. 187820-08-2)"
2003-3-2326	"4-Methyl-2(or 6)-(phenylamino)-6(or 2)-[(2-phenylethyl)amino]-3-pyridinecarbonitrile coupled with diazotized 2-amino-5-nitrobenzonitrile, diazotized 4-nitro-2-(trifluoromethyl)benzenamine and 4-methyl-2(or 6)-(phenylamino)-6(or 2)-[(phenylmethyl)amino]-3-"
2003-3-2327	"[총칭명] Alkanoic acid, polyalkenyl derives., compds. with hydroxyalkyl amine"
2003-3-2328	"Dodecyl 2-methyl-2-propenoate polymer with ethenylbenzene, hexadecyl 2-methyl-2-propenoate, methyl 2-methyl-2-propenoate, 2-(4-morpholinyl)ethyl 2-methyl-2-propenoate, octadecyl 2-methyl-2-propenoate, pentadecyl 2-methyl-2-propenoate, tetradecyl 2-methyl"
2003-3-2329	Methyl 2-methyl-2-propenoate polymer with ethenylbenzene and 2-propenenitrile (CAS No. 25213-88-1)
2003-3-2330	"Methyl oxirane polymer with oxirane, butanedioate (CAS No. 62683-37-8)"
2003-3-2331	"[총칭명] 5-(Substituted triazinyl)amino-4-hydroxy-3-(2-sulfophenyl azo)-naphthalene-2,7-disulfonic acid, sodium salt"

2003-3-2332	[총칭명] [(Sulfooxy)ethylsulfonyl]phenol-substituted isoquinoline dione-disulfonic trisodium salt
2003-3-2321	"(R,S)-1-[2-Amino-1-(4-methoxyphenyl)ethyl]-cyclohexanol acetate (CAS No. 부여안됨)"
2003-3-2333	[총칭명] Alkylaldehyde reaction products with alkylamine and polyalkylene dervies.
2003-3-2322	4-Methoxyphenylacetonitrile (CAS No. 104-47-2)
2003-3-2334	"6-Diazo-5,6-dihydro-5-oxo-1-naphthalenesulfonic acid ester with 3,3'-bis(2-hydroxy-5-methylbenzyl)-4,4'-dihydroxy-5,5'-dimethyldiphenylmethane (CAS No. 167933-51-9)"
2003-3-2323	"[총칭명] Alkenoic acid polymer with alkenylbenzene, alkylacrylate and alkylstyrene"
2003-3-2335	"[총칭명] Copolyester of aromatic diacids, aliphatic diacids, aromatic anhydride and diols"
2003-3-2336	"2-Methyl-2-propenoic acid polymer with butyl 2-propenoate, ethenylbenzene, methyl 2-methyl-2-propenoate and 1,2-propanediol mono-2-propenoate (CAS No. 67939-50-8)"
2003-3-2337	"[총칭명] Polyphosphoric acids polymers with fats and glyceridic oils, substituted bis-phenol A and substituted alcohol"
2003-3-2338	"1-[4-(Phenylthio)phenyl]-1,2-octanedione 2-(O-benzoyloxime) (CAS No. 253585-83-0)"
2003-3-2339	2-(Phenylthio)ethanol (CAS No. 699-12-7)
2003-3-2340	"Butyl 2-propenoate polymer with 1-(3,4-dichlorophenyl)-1H-pyrrole-2,5-dione, ethenylbenzene, 2,5-furandione and 2-methyl-2-[(1-oxo-2-propenyl)amino]-1-propanesulfonic acid (CAS No. 312953-81-4)"
2003-3-2341	"(3R,6R)-3,6-Dimethyl-1,4-dioxane-2,5-dione polymer with rel-(3R,6S)-3,6-dimethyl-1,4-dioxane-2,5-dione and (3S,6S)-3,6-dimethyl-1,4-dioxane-2,5-dione (CAS No. 9051-89-2)"
2003-3-2342	Butyl 2-methyl-2-propenoate polymer with ethenylbenzene and 2-propenoic acid (CAS No. 25609-90-9)
2003-3-2343	"N-[2-[(2-Chloro-4,6-dinitrophenyl)azo]-5-(di-2-propenylamino)-4-methoxyphenyl]acetamide (CAS No. 85508-41-4)"
2003-3-2344	"3,3',5,5'-Tetramethyl-1,1'-biphenyl-4,4'-diol (CAS No. 2417-04-1)"
2003-3-2345	[총칭명] Copolymer of alkylacrylate-substituted alkene-alkylacrylamide-fluoroalkylacrylates
2003-3-2346	"2-[[8-[[6-[(2-Carboxyphenyl)amino]-1,4-dihydro-4-oxo-1,3,5-triazin-2-yl]amino]-1-hydroxy-3,6-disulfo-2-naphthalenyl]azo]benzoic acid, tetralithium salt (CAS No. 252579-81-0)"
2003-3-2347	"(1R,2S,5R)-5-methyl-2-(1-methylethenyl)cyclohexanol (CAS No. 89-79-2)"
2003-3-2348	"(1R,2S,5R)-5-methyl-2-(1-methylethyl)cyclohexanol (CAS No. 2216-51-5)"
2003-3-2349	[총칭명] Substituted cyclohexyl hydroxylated alkyl(C=1-5) carbonate
2003-3-2350	"4,4'-Methylenebis(2,6-xylidine) (CAS No. 4073-98-7)"
2003-3-2351	" α -(2-Methyl-1-oxo-2-propenyl)- ω -(sulfooxy)poly[oxy(methyl-1,2-ethanediy)], sodium salt (CAS No. 102051-18-3)"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